

파인만 스타국공채법인MMF 1호

규약변경대비표

효력발생일: 2023년 3월 31일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“안정적 자산 비중”이라 한다)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u>현금</u><u>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</u><u>양도성 예금증서</u><u>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『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</u><u>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(기업어음 증권을 포함한다)</u><u>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. 다만,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나목의 (2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u>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, 또는 단기 사채</u>
<p><u>(신설)</u></p>	<p>제28조의2(선환매유인 관리조치)</p> <p>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%를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</u></p>

	<p>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,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.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(30%)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.</p> <p>⑥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 방안, 평가방법변경(시가평가),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
<p>제29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</p> <p>①~② (생략)</p>	<p>제29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 영업일 연속 100 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에는 법 제 238 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 260 조 제 2 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탁계약서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 직전 10 영업일 이내에 일시적·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<p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투자 신탁재산 평가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⑥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</p>

	<p><u>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⑦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투자신탁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(용어변경)</u></p> <p>- 매입방법/환매방법: 제 X 영업일</p>	<p>- 매입방법/환매방법: X 영업일</p>
<p>부 칙</p>	<p>(시행일) 이 변경된 신탁계약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p>